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의 입양휴가 급여 지급 근거 마련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2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의 입양휴가 급여 지급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3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의 입양휴가 급여 지급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¹⁾의 입양휴가 도입에 따라 국가가 입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 <u>근로기준법</u> 」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 「 <u>근로기준법</u> 」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	② -----

1) 한정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21호

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 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 ----- 「근로기 준법」 제74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은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및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를 규정하면서 그 휴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²⁾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급된 출산휴가급여등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됨.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³⁾의 의결을

2)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 전부 유급이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유급임.

3)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21호

전제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입양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국가가 그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제18조의 국가의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휴가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외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입양휴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양휴가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급여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여 입양휴가가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입양휴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려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바,⁴⁾ 입양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고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23호)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입양휴가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입양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60일 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8